

감정평가서

건명	김영자 소유물건(2025타경502287)
의뢰인	대전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수경
평가서번호	G06-250423-005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감정평가법인 공감(주) 대전세종충남지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로 7, 애니빌프라자 202호 (우 34068)
대전세종충남지사 : TEL.042-710-7012 FAX. 042-710-7013

(부동산)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이정재

감정평가법인 공감(주) 대전세종충남지사 지사장 조규장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액	일억칠천오백만원정(₩175,000,000.-)					
의뢰인	대전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수경		감정평가목적	법원경매		
채무자	-		제출처	대전지방법원 경매4계		
소유자 (대상업체명)	김영자 (2025타경502287)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 조건	-		
목표시근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귀제시목록 등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5.04.30	2025.04.25 ~ 2025.04.30	2025.04.30	
감정평가 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구분건물	1개호	구분건물	1개호	-	175,000,000
		이	하	여	백	
	합계					₩175,000,000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인)		
	조규장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1. 대상물건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 감정평가는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연기리 소재 연기면 보건지소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는 세칭 '보성풀하우스 101동' 4층 401호에 대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2.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였으며, 별도로 부가된 감정평가조건은 없음.

3.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로서, 본건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인 2025년 04월 30일 임.

4.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실지조사기간은 2025년 04월 25일 ~ 2025년 04월 30일 이며, 대상물건의 존재여부, 공부 및 제시목록과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확인 등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대상 물건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실지조사 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감정평가 대상물건

[대상 단지 개요]

[자료출처 :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연기리 443-16외 [도로명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당산말길 6		
건물명	-		
대지면적(㎡)	819.0	연면적(㎡)	1,245.64
건축면적(㎡)	343.77	주용도	연립주택
호수/세대수	-호/12세대	사용승인	2015-02-02

[대상 물건 개요]

[자료출처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기호	동	층	호	전유면적(㎡)	대지권면적(㎡)
1	-	4	401	83.11	68.1816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6. 그 밖의 사항

- 가. 본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은 귀 제시목록 및 관련 공부 등에 의하였음.
- 나.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내부확인이 곤란하여 본건의 내부상태는 표준적인 설비 및 이용상황 등을 기재하고 평가하였으며, 호별위치는 실제 점유부분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유의바람.
- 다. 구분소유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요청에 따라 토지·건물의 배분가격을 구분건물평가명세표상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한국부동산연구원, 아파트의 토지·건물 배분비율표 등 참조]
- 라. 본건 소유권 대지권에 포함되는 연기리 443-20(61㎡, 소유자: 이*숙, 소유권대지권)번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지권 목적인 토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일반건축물대장 및 현황 연기리 443-16, 443-17번지상에 소재하고, 등재된 대지면적도 443-16, 443-17번지만을 기준한바, 현황 대지권면적을 443-16, 443-17번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참여 및 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 마. 본 감정평가에서 인용한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의 지번 및 호수는 개인정보보호 관계로 별표(*)로 표기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감정평가방법

1. 감정평가 근거 규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 (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제12조】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 (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 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대상물건의 감정평가방법

- 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은 상기의 감정평가방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규정을 두었음.
- 다. 주거용 구분소유건물인 대상물건의 특성상 비용성에 중점을 둔 원가법, 수익성에 중점을 둔 수익환원법 등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다른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비교 검토는 생략하였으며, 인근 유사 지역내 비교성 있는 구분건물의 정상적인 거래가격 수준, 평가사례 등의 참고가격으로 합리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I.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가액

거래사례비교법의 시산가액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산정하였음.

가. 비교거래사례의 선정

하기 사례 중 인근지역에 소재하며 유사면적의 거래사례로서 시간적·물적 비교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사례로 적절한 가격수준으로 판단되는 <거래1>를 비교사례로 각각 선정함.

[참고 거래사례]

[자료출처 : KAIS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소재지	건물명	동/호	사용승인	전유면적 (㎡)	거래가격(원) 전유면적당단가(원/㎡)	거래시점
거래1	연기면 연기리 443-*	-	30*호	2015	83.69	180,000,000 (@2,150,795)	2023-11-23
거래2	연기면 연기리 3-1*	-	20*호	2014	79.39	160,000,000 (@2,015,367)	2022-02-25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나.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비교사례에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가 반영되어 있거나 거래 당사자가 시장에 정통하지 않은 등 가격이 부적절한 경우 이를 정상화시키는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 본 거래사례는 인근 지역 내 동일 또는 유사한 물건의 가격수준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므로 별도의 사정보정을 요하지 않음.

다. 시점수정

시점수정이란 비교사례의 거래시점과 대상물건의 기준시점이 불일치하여 가격수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 비교사례의 가격을 기준시점의 가격수준으로 보정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 본 감정평가는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유형별 매매가격지수 중 본건과 물적 특성이 높은 지수를 적용하여 시점수정함.

$$\text{시점수정치} = \text{기준시점지수} / \text{거래시점지수}$$

[시점수정]

[자료출처 :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정보체계(KAIS)]

비교 사례	대상지역 (유형)	기 간	계 산 식
거래1	세종특별자치시 (연립다세대)	2023.11.23 ~ 2025.04.30	거래시점 : 2023.11.23, 2023년10월 지수를 적용 함 기준시점 : 2025.04.30, 2025년03월 지수를 적용 함 2023.11.23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3년10월) : 98.1 2025.04.30 매매 가격지수 (적용:2025년03월) : 95.9 시점수정치 : 95.9/98.1≒0.97757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라. 가치형성요인 비교

호별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 수준의 비교로서 비교사례 대비 본건 개별호의 외부, 내부 및 호별요인 등 격차를 분석하였으며, 제반 개별요인은 아래와 같음.

(1) 가치형성요인 비교표

조 건	세 부 항 목
단 지 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단 지 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단지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대형, 중형, 소형), 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호 별 요 인	층별 효용,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조망, 동별, 라인별 접근성),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 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철도 등에 의한 소음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일련 번호	단지 외부 요인	단지 내부 요인	호별 요인	기타 요인	누 계	비 교 내 용
1	1.00	1.00	1.00	1.00	1.000	제반 대등함.

마. 대상물건의 시산가액

기호	사례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정 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면적 (㎡)	산출가액 (원)	감정평가액 (원)
1	2,150,795	1.00	0.97757	1.000	83.11	174,743,152	175,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기타 참고사항

가. 인근지역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본건과 유사한 인근지역 내의 구분건물의 가격수준은 160,000,000원 ~ 180,000,000원 수준임.

나. 인근지역 유사부동산의 평가사례

[참고 평가사례]

[자료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KAPA HUB)]

기호	평가목적	소재지	건물명	동/호	사용승인	전유면적 (㎡)	평가가액(원) 전유면적당단가(원/㎡)	기준시점
가	법원경매	연기면 연기리 443-1*	보성폴 하우스 101동	40*	2015	83.20	175,000,000 (@2,103,365)	2025-01-16
나	법원경매	연기면 연기리 3-1*	-	40*	2015	79.39	171,000,000 (@2,153,924)	2023-12-04

다. 대상물건의 공시가격

[공시가격]

[자료출처 :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공시가격]

기호	2024.01.01	2023.01.01	2022.01.01	2021.01.01	비 고
1	9,700,000	92,300,000	98,900,000	97,700,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V. 감정평가액 결정 및 의견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제반 법령에 근거하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적정하게 평가되었으며, 주거용 구분건물의 특성상 비용성에 중점을 둔 원가법, 수익성에 중점을 둔 수익환원법 등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른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비교 검토는 생략하였음. 인근 유사부동산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수준 및 평가사례, 부동산시장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기호	소재지	동	층	호	전유면적 (㎡)	대지권면적 (㎡)	감정평가액(원)
1	연기리 443-16외	-	4	401	83.11	68.1816	175,000,000
합 계							175,000,000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연기리	443-16, 443-17	연립주택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철재기와)지붕 4층				
	[도로명주소] 세종특별자치 연기면 당산말길6							
	(1)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연기리	443-16	대	계획관리지역	668			
	(2) " "	443-17	대	계획관리지역	151			
(3) " "	443-20	대	계획관리지역	61			현황 소유권 대지권 면적 에서 제외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4층 제401호	83.11	83.11	175,000,000	비준가격 공용면적 포함평가
			(1~2) 소유권대지권		68.1816 819x----- 819	68.1816		
							토지·건물 토 지 : 52,500,000 건 물 : 122,500,000	
	합 계			이 하		여 백	₩175,000,000.-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연기리 소재 '연기면 보건지소'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세칭 '보성플하우스 제101동 제401호'로서, 주위는 농가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접근 자유로우며, 인근 대중교통시설 및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철재기와)지붕 제4층 제401호 단위호로서,

외벽 : 석재타일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새시창 등 임.

(4) 이용상태

주거용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급배수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이 있음.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공히 일단의 유사사다리형으로서 현황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서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현황도로를 통하여 진출입 가능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공히 계획관리지역 , 주거개발진흥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연기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임.

(9) 공부와의 차이

본건 소유권 대지권에 포함되는 연거리 443-20(61㎡, 소유자: 이*숙, 소유권대지권)번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지권 목적인 토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일반건축물대장 및 현황
연거리 443-16, 443-17번지상에 소재하고, 등재된 대지면적도 443-16, 443-17번지만을
기준한바, 현황 대지권면적을 443-16, 443-17번지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참여 및
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내부확인이 곤란하여 본건의 내부상태는 표준적인 설비 및 이용상황, 건축물현황도, 외관상 건물구조 및 상태의 관찰과 탐문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 시 유의바람.
- 본건 서측에 소재하는 현황도로(연기리 443-9, 443-22번지)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유인바, 경매 진행시 도로의 성격, 권리 및 사실관계 등에 유의하시기 바람.

광역위치도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연기리 443-16 401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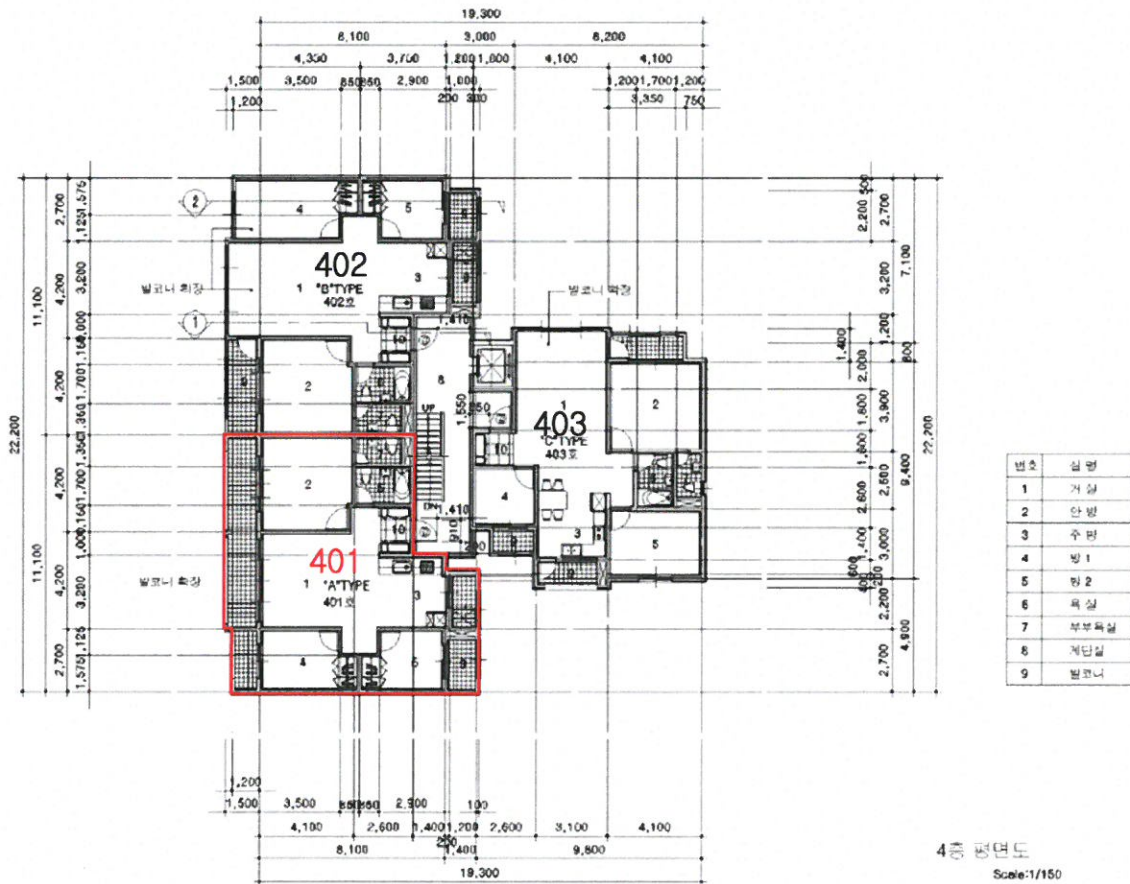


위 치 도



호별 배치도

No scale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연거리 443-16 401호

사 진 용 지



본건 전경 및 접면 도로



본건 전경

사 진 용 지



공동현관



본건 현관